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94호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

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

반환명령을 받은 자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
사업주	회사명	
	소재지	
과오급 결정사유		
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		
납부방법	1. 일시납부	2. 분할납부(　　회)

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「고용보험법」 제62조제4항, 제69조의9,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·제115조의5·제125조의4·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,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면 위 "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"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직인

심사청구 안내
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자(　　) 전화번호(　　) FAX번호(　　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